

# G-Welfare Weekly Report

## 01

###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## 1.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의 성과\*

##### 01 주요내용

- 지난 2007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정
- 차별행위의 범위와 영역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규정
  - 차별행위를 직접차별, 간접차별,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,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,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보조금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차별로 규정
  - 차별의 영역은 고용, 교육,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,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, 모·부성권 및 성, 가족·가정·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금지
-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·시행되면서 고용·교육, 재화·용역 공급 및 이용, 서비스 이용, 사법·행정 절차, 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차별 해소에 기여
  - 제정 당시 장애인 인권 향상,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와 10년 간 장애인 차별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회합의와 인식 제고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, 장애인 당사자의 측면에서는 인권 민감성 제고와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력이 향상됨
- 그러나 임의규정이 많고, 처벌 수준 미약 등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타 법률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5개 지역 순회(서울, 대전, 부산, 대구, 광주)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개정 권고안 마련 중
  -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(4월~10월)을 시행 중이며,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과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추진 중에 있음
  -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로 인식하여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「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

\*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, 제정 10년을 맞은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의 성과를 장애인 인권과 건강권 중심으로 정리

##### 02 경기도 시사점

-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「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하고,
- 현재 남부/북부에 설치된 장애인인권센터를 법률에 명시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정기관으로 등록 추진하여 장애인인권의 법적 기반을 확립

## 2. 장애인 주치의제도 올해 12월부터 시행

### 01 주요내용

-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장애인건강법)이 제정, 시행 예정\*이며, 핵심내용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
  -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(2000년 19%, 2005년 30.1%, 2011년 31.5%, 2014년 32.8%)\*\*됨에 따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
  - 제1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
-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단지 약과 검사 처방을 내는 치료중심이 아닌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
  - 장애인 주치는 장애인의 건강을 가장 먼저 대하고 포괄적, 지속적, 전인적으로 관리하며, 필요시에는 적합한 다른 시설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맡는 1차 의료 의사
  - 장애인주치의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주관 단체로 하여 서울·경기·강원·전남·전북·부산의 6개 권역 12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
  -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절차는 장애인이 주치의사업을 등록하면 기초조사를 통해 건강코디네이터와 주치가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우선순위와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 방문, 유선 등을 통해 진료·상담·건강관리 진행
- 장애의 주치의 제도를 통해 치료효과 증진,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, 병원 간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
  - 장애인측면 : 재활, 건강증진 및 예방, 질환 관리 등 의료접근성강화(방문 및 전화, 인터넷 상담 가능), 의료기록의 체계적 관리로 진료 및 예후의 부작용 최소화와 치료효과 증진
  - 국가적 측면 :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개선을 통해 합리적 의료자원 분배와 의료비부담비용 감소를 통한 무상의료 증진, 일차의료 촉진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,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
  - 의료인측면 : 장애인-의사의 지속적 관계를 통한 신뢰감 형성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,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, 의뢰-회송체계 확립으로 일차의료 전문의와 특정 전문의 혹은 병원사이의 협력관계 구축
-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진료 및 수가체계, 사업 운영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함
  - 먼저, 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주치의의 담당 내용 등을 정하고
  - 다음으로 장애인 주치의 자격 및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,
  - 마지막으로, 시범사업과 같이 건강코디네이터에 대한 양성교육과 돌봄, 보건, 의료 서비스를 연계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)하는 운영체계 구축

\*시행일자는 2017.12.30.임

\*\*장애인실태조사 각 년도

### 02 경기도 시사점

- 과거 만성질환 주치의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31개 시군에 장애인 주치의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등 사업 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한편, 법 시행과 더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장애인의 일관된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 도 및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
- 1차 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의 의사,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이해,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을 실시

# 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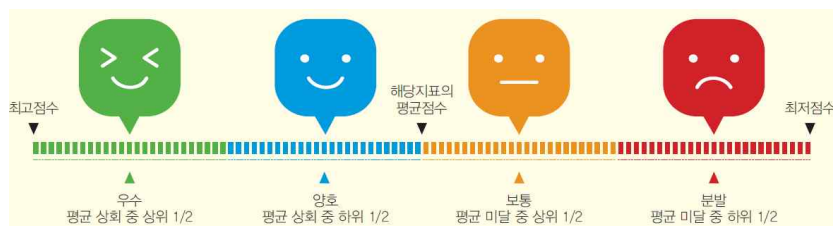
## 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### 시도별 장애인복지 평가 결과 비교\*

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「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·교육 비교」 자료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및 교육 분야 수준을 비교 제시

-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매년 시도 장애인 복지 분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 2011년부터는 장애인 교육 분야도 별도로 평가
  - 영역별 평가점수를 토대로 4단계 평가기준에 따라 나뉜 시도별 등급을 발표

〈그림〉 장애인 복지·교육 평가기준



- **장애인 복지 분야\*\*** 전국 평균은 48.7점이며, 경기도는 '양호' 등급(전년대비 20.8% 향상)
  - 복지 분야 전국 평균점수는 전년대비 2.2점 향상되었으며, 지역 간 복지 분야 격차는 완화
  - 전국 17개 시도 중 복지 분야 '우수' 등급 지역은 서울·대구·광주·대전·세종·제주(6곳), 반면 '분발' 등급 지역은 전북·전남·경북(3곳)
  - 2015년에 '보통' 등급이었던 경기와 부산은 2016년에 '양호' 등급으로 향상
- **장애인 교육 분야\*\*\*** 전국 평균은 65.15점이며, 경기도는 '분발' 등급(전년대비 5.2% 하락)
  - 교육 분야 전국 평균점수는 최근 4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고, 지역 간 교육 분야 격차도 심화
  - 17개 시·도의 교육 분야 '우수' 등급 지역은 대전·울산·세종·강원·충북·경남(6곳), 반면 '분발' 등급 지역은 서울·인천·경기(3곳)
- 경기도의 경우 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점수가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우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, 교육 분야는 전국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

\*가장 최근에 발표된 복지·교육지표는 2015년에 조사된 자료로, 우수·양호·보통·분발로 평가결과를 제시

\*\*복지 분야 지표는 ①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, ②보건 및 자립 지원, ③복지서비스 지원, ④등편의·문화여가 및 정보접근, ⑤복지행정 및 예산영역, ⑥시도의 장애인복지 특화·선도사업 등 6개 영역으로 구성

\*\*\*교육 분야는 통합교육 학생비율, 특수학급 설치율 등 12개 하위지표로 구성

〈표〉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평가 결과

	복지	전년대비 증감률	교육	전년대비 증감률		복지	전년대비 증감률	교육	전년대비 증감률
전국	(평균점)	4.8	(평균점)	-2.8	세종	우수	8.8	우수	2.6
경기	양호	20.8	분발	-5.2	강원	양호	15.8	우수	1.5
서울	우수	-2.1	분발	-3.2	충북	양호	5.7	우수	-5.9
부산	양호	8.7	보통	-2.8	충남	보통	1.8	양호	-3.5
대구	우수	21.6	보통	-7.6	전북	분발	-0.8	보통	1.5
인천	보통	-3.5	분발	-3	전남	분발	-1.8	양호	1.0
광주	우수	-5.9	양호	-10.5	경북	분발	3.7	양호	0.1
대전	우수	-0.2	우수	-2.6	경남	보통	-13.4	우수	0.1
울산	양호	8.2	우수	6.2	제주	우수	-4.0	양호	-2.8

(단위 : %)

### 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행사명	주요내용
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참여기관 모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 간 : 4. 13.(월) ~ 4. 26.(금)</li> <li>• 대 상 :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(이용시설 및 생활시설)</li> <li>• 내 용 : 개별 복지시설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컨설팅 제공 ※분야 : 조직진단 및 재설계, 복지경영시스템 구축, 예산 및 노무관리 등</li> <li>• 문 의 :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 (☎267-9365)</li> </ul>

# 03 FACT CHE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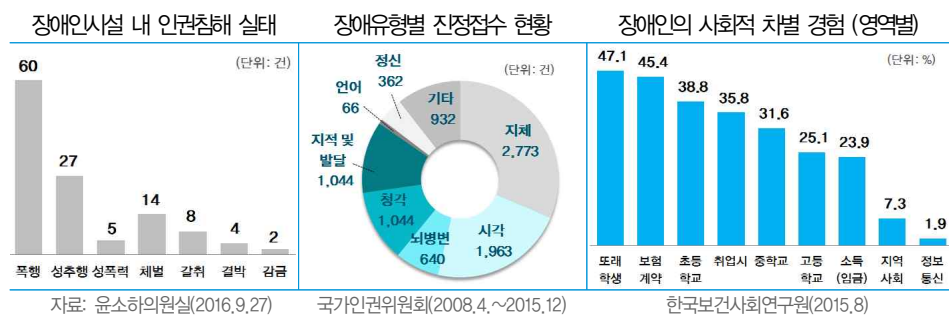
## 장애인의 날, 차별인가? 배려인가?

- 정부는 '81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해왔으며, '91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
  - 장애인의 날은 1970년 국제재활협회가 각 나라에 '재활의 날'을 지정·기념할 것을 권고한 것을 시초로, 이에 한국재활협회가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중 통계적으로 가장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하여 재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\*
  - 그 후 UN이 1981년을 '세계 장애인의 해'로 선포하고 각국에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하면서, 당시 보건사회부가 기존의 재활의 날을 '장애인의 날'로 변경하고 '제1회 장애인의 날' 행사를 진행
-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전략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는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
  - 국제기구의 기념사업 독려로부터 탄생하면서 법정지정 20년이 지나도록 비장애인과의 통합을 성취하지 못한 채 기념 행사에만 집중하였고, 더구나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수적으로 제한되어 혜택을 누리는 장애인은 소수에 불과
  -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장애인의 날이라는 '특별한 배려'를 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지적
-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권리신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핵심구호와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
  - 장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같은 인간이라는 보편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날로 변화되어야 하며, 장애인이 직면한 최우선적 문제의 강조를 위해 매해 장애인의 날마다 주제를 선정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인식개선에 더 효과적

\*국가기록원 홈페이지

# 04 통계로 보는 복지

##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



- 복지부 인권실태 조사 결과, 2년간 장애인시설 91곳에서 120건의 인권침해가 발생
  - 2014년 602곳(입소자 2만7,168명), 2015년 255곳(입소자 1만1,265명)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2014년 44곳 · 2015년 47곳에서 총 120건의 인권침해 발생
-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은 계속 증가
  -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은 총 2만3,787건으로 7년 전 대비 7배 이상 급증
-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으로 학교생활이나 보험계약, 소득수준에서의 차별이 심각
  - 학교생활에서 포레 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이 47.1%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보험제도 계약(45.4%), 초등학교 입학 · 전학(38.8%), 취업(35.8%)의 순

# 05

## 해외동향

### 해외 장애인복지 현황

장애인의 날(4월 20일)을 맞아 해외의 장애인 관련 기념일 현황 및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이 높은 국가들의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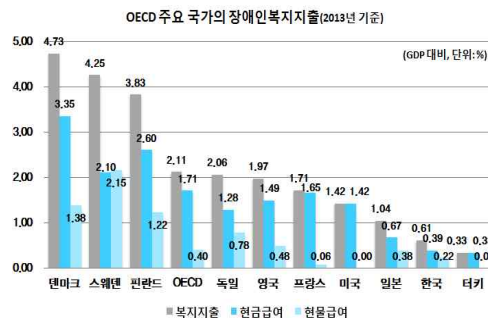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'장애인의 날'을 제정하였으나, 해외에서는 정부가 장애인 기념일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는 경향
  - 다만 해외에서는 서로 다른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로 기념일을 지정(희귀질환, 다운증후군, 자폐증, 파킨슨병 등)
  - 한국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(4월 20일)의 인지도가 더 높은 관계로 국제적인 장애인 관련 기념일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음

〈표〉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일 현황

기념일	날짜	제정처
세계 희귀질환의 날	2월 마지막 날	유럽희귀난치성질환기구(EURORDIS)
세계 다운증후군의 날	3월 21일	다운증후군 연구를 위한 프랑스 협회(AFRT) 제정 후 국제연합(UN)에서 인정
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	4월 2일	국제연합(UN)
세계 파킨슨병의 날	4월 11일	유럽 파킨슨병 학회(EPDA) 및 세계 보건기구의 합동 이니셔티브로 시작
세계 뇌성마비인의 날	10월 첫째 주 수요일	미국 및 호주 뇌성마비 연합
흰 지팡이의 날*	10월 15일	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(WBU)
세계 장애인의 날	12월 3일	국제연합(UN)

- 한국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을 기준으로 OECD 최하위권

- 장애인복지지출\*\*은 장애, 산업재해, 질병 등 '근로 무능력' 상태와 관련된 현금·현물 급여를 의미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
-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은 0.61%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매우 낮은 편임(OECD 평균의 30%, 덴마크의 13%)



-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이 높은 유럽 국가 및 미국에서는 고용, 교육 및 주거 등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

-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이 높은 북유럽에서는 대중교통 및 시설들이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없음
- 또한 경제적 지원(아동 장애 수당, 16세 이상 장애 수당, 연금수혜자들을 위한 보조수당 등)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
-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무고용제(의무고용률 5%)와 더불어 차별금지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대기업 내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높는데 그 이유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 및 취업 교육 등을 통한 대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고용 지원을 꼽을 수 있음\*\*\*
- 독립생활 원칙을 강조하는 영국에서는 장애인에 독립 공간을 보장하고 동일한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각기 다른 수준의 지원을 제공\*\*\*\*
- 장애등록·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학생은 수업 시간에 노트필기 도우미, 장애인용 수업 기자재 및 자료, 전문수화 통역사 지원을 제공 받는 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받고 있음

\*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나타내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징

\*\*OECD (2017), Public spending on incapacity (indicator) (Accessed on 07 April 2017)

\*\*\*고용노동부 (2013), 「적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연구」

\*\*\*\*국가인권위원회(2014), 「장애인 주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」